

의안번호	2217334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6. 8. 10.
추계번호	26B1372
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(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)	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.(제1항) 1.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(이하 “선정 신청일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이전 <u>5년</u>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. 다만,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<u>5년</u>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.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<u>85세</u> 미만일 것 ※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연령 상한(75세→85세) 및 자격 조건(10년→5년) 완화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(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)	-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(이하 “경영이양직불제”라 함) 시행중
 - (시행일) '21.3.1.(최초)
 - (목적)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도모
 - (참여대상)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*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** 어업인
 - * 계원 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
 - ** 만 80세 미만까지 확대(2023.4.1.~2026.12.31.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확대, 「수산직불제법」 부칙 제2조)
 - (지급기준)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(수입)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

[표 1]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기준

소득구간	200만원 이하	200만원 초과 ~ 2,400만원 이하	2,400만원 초과
지급액 (연/월)	연 120만원(정액)/ (월 10만원)	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%	연 1,440만원(정액)/ (월 120만원)

- 2023년 이후 경영이양직불제 예·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- (재정부담주체) 전액 국비(100%)

[표 2] 경영이양 직불금 예·결산 현황: 2023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2023		2024		2025		2026
	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
수산공익직불제 (3460-310)	경영이양 직불	500	236	466	361	466	395	555
	집행률	—	47.3%	—	77.4%	—	88.8%	—

주: 경영이양 직불금의 약 1.7% 행정비 포함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-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,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,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및 자격 조건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실적 저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어촌계원 자격 기준을 5년으로, 신청 연령 조건 상한은 만 80세 미만까지로 대상자를 확대·운영중¹⁾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만 75세²⁾ 이상 만 85세 미만 어업인 중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 수, 해당 고령 어업인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 및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및 자격 조건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부칙 <법률 제19010호, 2022. 10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)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1.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.
2.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.

2)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만 80세 미만으로 확대·운영하고 있지만, 개정안은 연령조건 상한을 75세에서 85세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